

국제 앰네스티

사형집행 유예

(THE 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)

유엔 총회 결의안 62/149

2007년 12월 18일

AI Index: ACT 50/020/2007

12월 18일, 유엔 총회는 찬성 104표, 반대 54표, 기권 29표로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 “사형집행 유예” 결의안을 승인하였다.

다음은 국제 앰네스티가 한국어로 번역한 결의안 62/149의 내용이다:

유엔 총회는,

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의거하여, 세계인권선언¹,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² 및 아동 권리 협약³ 을 상기하고,

결의안 2005/59⁴를 마지막으로, 지난 십여 년 간 인권 위원회(Commission on Human Rights)에서 지속적으로 채택되어 온 사형제도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

¹ 결의안 217 A (III).

² 결의안 2200 A (XXI), 부록 참조.

³ 유엔, 조약 모음집(Treaty Series), 제 1577 권, 27531 호.

⁴ 경제사회이사회 공식 기록 문서(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), 2005, 부록 3 과 정오표 (E/2005/23 및 안 1 과 2), 제 2 장 섹션 A.

여전히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사형집행 유예를 선언하고 나아가 이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 것을 *상기하며*,

사형제도 문제에 대해 인권 위원회가 이룬 중요한 업적을 *되새기고*, 인권 이사회(Human Rights Council)가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내다보며,

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, 사형집행 유예가 인권의 향상과 점진적인 발전에 공헌할 것을 확신하며, 사형집행의 억지력에 대한 결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오판으로 인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음을 *확신하며*,

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,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것을 *환영하며*,

1. 사형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*깊은 유감을 표한다*,

2. 사형집행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다음을 *요구한다*.

(a) 사형수들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, 특히 1984년도 5월 25일 경제사회이사회(Economic and Social Council) 결의안 1984/50 의 부록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 기준(minimum standards)을 지키도록 한다;

(b) 사형집행과 관련한 정보 및 사형수들의 권리 보호 준수 사항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;

(c) 사형집행을 점진적으로 제한하고, 사형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감소시킨다;

(d)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사형집행 유예를 실시한다;

3.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재도입하지 않도록 *요구 한다*;

4. 유엔 사무총장이 제 63회 총회에서 본 결의안의 이행에 관하여 보고 하도록 *요청한다*;

5. 동일 안건을 제 63회 총회에서 계속 다루도록 *결정한다*.

**INTERNATIONAL SECRETARIAT, 1 EASTON STREET,
LONDON WC1X 0DW, UNITED KINGDOM**